

第137回國會 國會本會議會議錄 第5號

大韓民國國會事務處

1987年10月12日(月) 午後 2時

議事日程(第5次本會議)

1. 大韓民國憲法改正案

附議된案件

1. 大韓民國憲法改正案(李大淳議員 金鉉圭議員 鄭在原議員 梁正圭議員外

260人 發議).....1面

(14時22分 開議)

○議長 李載澧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會議을 開催하겠으니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5次 本會議을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議事局長으로부터 報告가 있겠습니다.

○議事局長 陳在勳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報告事項은 끝에 실음)

1. 大韓民國憲法改正案(李大淳議員 金鉉圭議員 鄭在原議員 梁正圭議員外 260人 發議)

(14時25分)

○議長 李載澧 議事日程 第1項 大韓民國憲法改正案을 上程합니다.

이 憲法改正案은 지난 9月18日李大淳議員 金鉉圭議員 鄭在原議員 梁正圭議員外 260人으로부터 發議 提案되어 同月21日 大統領이 이를 公告하고 20日의 期限이 經過됨에 따라 오늘 本會議에 上程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發議者를 代表하여 蔡汶植議員이 나와서 說明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蔡汶植議員 蔡汶植議員입니다.

지난 39年間的 걸지않은 우리 憲政史에 있어서 그 동안 여덟차례에 걸쳐 點綴되어 온 執權延長手段이나 政治的 變革에 따라 이루어진 改憲과는 달리 國民의 輿望에 부응하는 憲法을 마련하고자 우리나라 政治면에 처음으로 與野合意에 의해 發議 提案된 第9次 憲法改正案에 대하여 提案說明을 드리게 될 것을 대단한 榮光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議員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 憲法改正案은 第12代 國會議員 總選後 提起된 改憲問題에 관한 與野間的 葛藤과 對立을 止揚하고 政局의 安定을 위해서 國民各界各層의 意見을 收斂하여 國民의 輿望에 따른 與野合意에 의한 憲法改正案을 마련하고자 지난 1986年6月24日 本會議 決議에 의하여 構成된 國會議法改正特別委員會에서 그 동안 各政黨間에 이루어진 改憲要綱에 관한 合意內容을 土臺로 하여 起草 成案한 憲法改正案을 지난 9月18日 與野議員 거의 모두인 民主正義黨의李大淳議員 統一民主黨의 金鉉圭議員 新韓民主黨의 鄭在原議員 한국국민당의 梁正圭議員外 260人이 現行憲法 第129條第1項에 의거 發議 提案하여 지난 9月21日 大統領에 의해 公告되고 20日이상의 公告期間을 거쳐 國會議決節次를 밟기 위하여 오늘 國會 本會議에 上程된 것입니다.

지난 第12代 國會議員 總選이후 우리 社會는 改憲問題를 둘러싸고 與野間的 不信과 葛藤 그리고 尖銳化한 政治的 對立으로 심한 國論分裂과 社會的 混亂을 거듭하기도 하였으나 마침내 國民大和合을 이룩하여 우리 歷史上 처음으로 與野 合意에 의한 大統領直選制의 憲法改正案을 提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與野議員은 지난 39年間 겪은 憲政史的 敎訓을 거울삼고 우리 國民의 創意와 勤勉으로 이룩한 經濟成長과 더불어 꾸준히 變化 成熟되어 온 國民의 民主力量과 多樣化된 民意를 폭넓게 受容해서 大韓民國 憲

政史의 새로운 章을 여는 合意改憲案을 提案함으로써 國民 모두의 同意와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自由民主主義 理念과 體制를 더욱 확고히 계승 발전시키고 祖國의 平和統一基盤을 더욱 공고히 하며 세계속에 雄飛하는 2千年代의 새 歷史創造에 획기적인 계기를 이룩코자 하는 것이 이 憲法改正案을 마련한 動機이며 趣旨인 것입니다.

冒頭에서 잠시 言及한 바와같이 이 憲法改正案은 與野 各 政黨間에 合意된 내용을 기초로 해서 國會내의 모든 交涉團體가 참여한 憲法改正特別委員會에서 滿場·致로 起草 成案한 것을 그대로 提案하는 등 國民의 合意를 導出하는데 필요한 모든 節次를 거친 것이며 참다운 民主化時代의 展開를 향한 國民의 輿望과 政治人의 時代的 使命이 함께 담겨진 것으로서 이 憲法改正案의 改憲方向은 다음 네가지의 基本原則아래서 마련된 것입니다.

첫째 大統領直選制의 採擇으로 國民의 自由로운 選舉에 의한 政府選擇을 보장함과 아울러 大統領單任制에 의한 平和的 政權交替의 傳統을 계승 확립함으로써 民主國家發展의 기틀을 더욱 확고히 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大統領의 非常措置權 國會解散權의 폐지를 통하여 大統領의 權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國政監査權을 부활하는 등 國民의 代表機關인 國會의 權限을 강화하여 그 機能을 활성화함으로써 國家權力의 균형과 調和를 도모하고, 法官의 任命節次 개선과 憲法裁判所의 新設 등을 통하여 司法權의 獨立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憲法의 實效性을 提高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拘束適否審査請求權의 전면보장 刑事補償制度의 확대 犯罪被害者에 대한 國家救助制 新設등 國民의 身體와 生命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言論·出版·集會·結社에 대한 許可·檢閱의 금지등 表現의 權利를 최대한 보장하며 勞動3權의 실질적 보장과 最低賃金制의 실시등 勤勞者의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를 확충하여 基本的人權을 대폭 伸張하려는 것입니다.

네째 經濟秩序에 있어서 自由經濟體制의 原理를 근간으로 하면서 적정한 所得의 分配地城經濟의 균형발전 中小企業과 農·漁民 보호 등을 통하여 모든 國民의 福利를 증진시

키고 國民生活의 基本적 需要를 충족시키는 社會正義를 실현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改憲의 基本方向과 原則아래 마련된 이 憲法改正案의 主要 改正事項別 改正理由와 改正內容을 說明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憲法前文 및 總綱에 大韓民國 臨時政府의 法統과 4·19 民主理念의 繼承을 明示하고 國家의 在外國民 保護義務와 自由民主의 基本秩序에 입각한 平和的 統一政策의 樹立 推進規定 그리고 軍의 政治的 中立性 規定을 新設하였습니다.

그 具體的 內容을 말씀드리면 먼저 前文에 民族自主精神과 民主主義理念의 結晶體이자 우리나라 近代의 政府建立의 精神的 礎石이라 할 수 있는 “3·1運動으로 建立된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의 繼承을 明示함으로써 日帝支配로 인한 民族史의 斷切을 連結시켜 國家의 正統性을 회복하도록 하였고 또한 民主憲政을 守護하기 위한 國民의 抵抗權問題에 관해서는 “不義에 抗拒한 4·19民主理念”을 繼承토록 함으로써 그 精神을 反映하였으며 다음 總綱에서는 우리 나라의 國際的 地位의 浮上과 함께 增加一路에 있는 海外僑民을 積極的으로 保護育成하기 위하여 案 第2條第2項에 國家의 在外國民保護義務規定을 新設하였고 分斷된 祖國의 現實을 勘案 民族統一至上課題임을 認識하여 “大韓民國은 統一을 指向하며 自由民主의 基本秩序에 立脚한 平和的 統一政策을 樹立·推進”하도록 案 第4條를 新設하였으며 또한 軍의 政治的 中立問題에 관해서는 案 第5條第2項 後段에 國軍의 “政治的 中立性은 遵守된다”라고 規定 그 趣旨을 反映하였고 또한 政黨條項에 관해서는 政黨의 組織·活動과 함께 그 設立目的도 民主的이어야 한다는 뜻을 明示하였으며 한편 그 目的이나 活動이 民主的 基本秩序에 違背될 경우에는 그 解散을 憲法裁判所에 提訴할 수 있도록 案 第8條에 反映하였습니다.

둘째로 國民의 權利意識이 고양되고 國民經濟生活이 크게 向上된 現實에 맞추어 國民의 自由와 權利를 最大限으로 伸張토록 國民의 基本權條項을 대폭 補完하였습니다. 그 具體的 內容을 말씀드리면 먼저 身體의 自由를 規定하고 있는 案 第12條에 있어서는 國家權力

의 濫用으로 因한 身體의 自由侵害를 防止하고 實質의인 基本權 實現을 위해서 處罰과 保安處分 및 強制勞役을 받을 要件에 適法한 節次에 의한 것을 追加하였고 令狀制度에 있어서도 適法한 節次에 따라 發付된 令狀을 提示하도록 하였으며 逮捕·拘束의 理由와 辯護人의 도움을 받을 權利가 있음을 告知받지 아니하고는 逮捕·拘束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함과 아울러 逮捕·拘束된 者의 家族 등에도 그 內容을 通知하도록 規定하여 刑事被疑者 등이 有利한 證據提示 其他 防禦權을 行使할 수 있는 機會를 주도록 하였고 한 사람의 國民이라도 억울하게 逮捕·拘束되는 일이 없도록 拘束適否審査請求權을 모든 拘束者에 認定하고 對象犯罪에도 아무런 制限을 두지 아니하도록 憲法上 保障하였습니다.

다음 國民의 政治的 意思表現의 權利인 言論·出版 및 集會·結社의 自由를 最大限으로 伸張하고 國家權力에 의한 侵害事例가 없도록 言論·出版에 대한 許可나 檢閱 및 集會·結社에 대한 許可는 認定되지 않는다는 것을 案第21條第2項에 新設 明文化하였으며 다만 表現의 自由의 重要性和 通信·放送·新聞등 言論媒體로서의 성격에 비추어 일정한 施設基準을 정하는 것은 不可避하다는 前提아래서 通信·放送의 施設基準과 新聞의 機能保障을 위해 必要한 事項은 法律로써 정할 수 있도록 同條第3項에 新設 規定하였습니다.

다음 財產權의 保障에서는 오늘날 大規模 公益事業 등으로 인하여 國民의 財產權이 制限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반해 現行 憲法에서는 公益을 強調함으로써 國民의 財產權保障이 未洽한 點을 勘案해서 國民의 財產權의 收用·使用 및 制限에 대해서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正當한 補償을 支給하여야 하도록 案第23條에 規定하였습니다.

다음 國民의 選舉權年齡問題에 있어서는 案第24條에서 選舉年齡을 法律에 委任하였고 國民의 請求權의 基本權에 있어서는 刑事被害者는 當該事件의 裁判節次에서 陳述할 수 있는 權利를 案第27條第5項에 新設하였으며 刑事 補償請求에 있어서도 無罪判決을 받은 때를 包含해서 法律이 정하는 不起訴處分을 받은 때에도 補償請求가 可能하도록 案第28條에 擴大 規定하였고 他人의 犯罪로 生命·身體에

被害를 받은 者는 國家로 부터 救助를 받을 수 있도록 案第30條에 新設 規定하였습니다.

다음 社會權의 基本權에 있어서는 大學의 自律性保障을 教育을 받을 權利規定에 追加하였고 지금까지의 우리 經濟成長은 勤勞者의 노력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認識하고 勤勞者의 生存權을 保障하기 위해서 勤勞福祉의 最大課題라 할 수 있는 最低賃金制의 實施를 案第32條 第1項에 歷代 憲法上 처음으로 新設 明文化하였으며 특히 女性勤勞者가 雇傭·賃金 및 勤勞條件에 있어서 不當한 差別을 받지 않도록 規定을 新設하여 雇傭 등의 分野에 있어서 實質的인 男女平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案第33條第1項에서 勤勞者의 團體行動權에 대한 法律留保條項을 削除함으로써 勤勞者의 勞動3權이 確實하게 保障되도록 하였으며 現行 憲法上 國公營企業體·防衛產業體등 國民經濟에 重大한 影響을 미치는 事業體에 從事하는 勤勞者의 團體行動權은 法律에 의하여 制限되고 있으나 勤勞者의 團體交涉力 向上에 있어 團體行動權의 保障이 핵심적 요소라는 點을 勘案하여 團體行動權制限對象을 縮小하고자 案第33條第3項에서 法律이 정하는 主要防衛產業體에서 從事하는 勤勞者의 團體行動權만을 制限할 수 있도록 하였고 國民의 人間다운 生活를 할 權利를 보다 積極的으로 保障하기 위하여 그 內容과 對象을 擴大하였는 바 女子와 老人·靑少年에 대한 國家의 保護規定을 案第34條에 新設 내지 補完하였으며 이와 함께 國家는 災害를 豫防하고 그 危險으로부터 國民을 保護할 義務規定을 新設하였고 環境權과 관련하여 國家의 住宅開發努力義務와 婚姻·家族·保健에 관한 權利에 母性保護規定을 새로이 追加하였습니다.

세째로 國會의 機能活性化와 地位向上을 위하여 國會의 權限을 強化하였습니다.

즉 國會運營의 活性化와 少數者保護를 위해서 國會臨時會 召集要求 定足數를 在籍議員 4分の 1이상으로 완화하고 定期會에 있어서 豫算案 決算등 國政審議의 內實化를 기할 수 있도록 定期會의 會期를 100日로 연장하였으며 아울러 같은 趣旨에서 國會의 年間開會日數 制限規定을 削除하여 開會日數에 制限없이 國會가 開會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行政府에 대한 效率인 감시 비판기능을 遂行토록 하기 위해서 國政監查權을 復活함과 同時에 現行的 國政調查權을 함께 規定함으로써 國政監查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감사하고 國政調査는 특정한 國政事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調査할 수 있도록 그 概念을 整理해서 案 第61條에 規定하였고 現행 憲法의 議院內閣制的 要素를 排除하고 行政府와의 權力均衡을 이루도록 國會의 國務總理 國務委員 解任議決權을 解任建議權으로 變更하여 案 第63條에 規定하였습니다.

네째로 大統領直選制를 採擇하고 長期執權防止裝置를 마련하였으며 大統領의 權限을 縮小調整하였습니다.

政府形態는 大統領中心制의 現行制度를 유지하면서 大統領直選의 國民的 合意를 받아들여 案 第67條에서 大統領은 國民의 普通·平等·直接·秘密選舉에 의해 選出하도록 大統領直選制를 採擇하고 大統領被選舉權者의 要件中 5年이상 계속 國內居住要件을 削除하였으며 大統領 任期滿了時 後任者選舉는 任期滿了 70日 내지 40日前에 闕位된 때는 60日이내에 選舉를 하도록 規定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憲政史의 골절은 大統領의 長期執權에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여 이를 방지하고 平和的 政府移讓을 保障함은 물론 인기형합적 政策을 豫防하고 소신있는 國政遂行을 보장토록 하기 위하여 大統領의 任期를 5年 單任으로 規定한 外에 大統領의 權限을 縮小해서 權威主義的 體制로의 變質을 豫防하는 데 力點을 두었습니다.

즉 現行 憲法上 大統領에 부여되어 있는 非常措置權은 그 發動要件을 엄격하게 制限하여도 政治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를 削除하고 그 대신 內憂·外患·天災·地變 또는 중대한 財政經濟上의 危機에 있어서 긴급한 措置가 필요하고 國會의 集會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해서 緊急財政經濟處分과 法律의 效力을 가지는 命令을 發할 수 있도록 하고 國家安危에 관계되는 중대한 交戰狀態에 있어서 國會의 集회가 不可能할 때에 한하여 法律의 效力을 갖는 緊急命令을 發할 수 있도록 하는 緊急財政經濟處分 命令制度和 緊急命令制度를 案 第76條에 新設하였으며 緊急財政經濟處分·命令과 緊急命令은 國會에

報告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며 國會의 承認을 얻지 못하면 그 때부터 그 命令은 效力을 상실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大統領의 權限中 議院內閣制的 要素인 大統領의 國會解散權을 削除하였으며 大統領의 諮問機關으로 國家元老諮問會議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 國民經濟諮問會議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司法權獨立의 保障과 관련하여 大法官 任命節次를 改善하여 大法官의 任命에 民意를 反映함으로써 그 身分을 強化하기 위하여 國會의 同意를 얻어 任命하도록 하였으며 司法의 自律性和 人事의 公正性을 기하기 위하여 一般法官의 任命에 大法官會議의 同意를 얻어 任命하도록 案 第104條에 規定하였고 大法院長의 任期를 6年으로 연장하며 大法官의 임기는 6年으로 하고 連任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裁判의 獨立性和 法官의 身分保障을 위하여 法官은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에 의해서만 罷免되도록 하였고 軍事裁判을 管轄하는 特別法院으로서의 軍法會議의 名稱을 軍事法院으로 變更함과 아울러 非常戒嚴下의 軍事裁判의 單審制 範圍內에 人權尊重의 側面에서 死刑을 宣告한 경우는 除外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憲法委員會를 廢止하고 案 第111條 내지 第113條에 憲法裁判所를 獨立機關으로 新設해서 憲法解釋의 一貫性和 繼續性을 유지하는 한편 司法의 政治化를 豫防토록 하였습니다.

憲法裁判所의 管掌事項으로서는 法院의 提請에 의한 법률의 違憲與否審判 彈劾審判 政黨解散審判 國家機關 相互間 등의 權限爭議에 관한 審判 그리고 國家權力에 의하여 個人的 基本權이 침해되는 경우 基本權의 保障과 貫徹를 위하여 國民 個個人的 特別한 權利救濟手段인 憲法訴願에 관한 審判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任期 6年の 裁判官은 法官의 資格을 가진 者 중에서 9人을 大統領이 任命하되 3人은 國會에서 選出하고 3人은 大法院長이 指名토록 하였고 憲法裁判所에서 違憲決定 彈劾의 決定 政黨解散의 決定 憲法訴願에 관한 認容決定을 함에는 裁判官 6人이상의 贊成을 요하도록 그 審判要件을 엄격히 하였으며 審判官의 身分保障과 憲法裁判所의 內部規

律에 관한 規則制定權을 規定하였습니다.

일곱째, 選舉管理에 있어서는 中央選舉管理委員의 任期를 6年으로 延長하였고 위원의 罷免要件을 彈劾 또는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로 하여 그 身分을 保障하였으며 中央選舉管理委員會에 內部規律에 관한 規則制定權을 부여하였습니다.

여덟째, 憲法上 經濟條項에 있어서는 自由市場經濟原理를 根幹으로 하면서 그 동안 產業社會에서 야기되는 階層間·産業間·地域間의 不均衡을 是正하기 위하여 필요한 規制와 調整 그리고 國家의 努力을 強調하는 內容으로 補完하였습니다.

우리나라 經濟秩序에 관한 原則規定인 案第119條에서는 國家는 均衡있는 國民經濟의 成長과 적정한 所得分配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市場支配와 經濟力의 濫用을 防止하도록 하며 經濟主體間의 調和를 통한 經濟의 民主化를 이루기 위하여 經濟에 관한 規制와 調整을 할 수 있도록 現行規定을 補完하였고 案第121條의 農地制度에 관하여는 耕者有田의 原則達成과 小作制度의 禁止를 宣言하고 아울러 例外的으로 認定되는 農地의 質賃借나 委託經營의 認定要件을 엄격히 하였으며 國土의 利用·開發을 위한 制限規定인 案第122條에서는 國土가 國民 모두의 生産 및 生活의 基本임을 明示하였습니다.

또한 案第123條에서는 農漁業保護 育成을 위하여 國家는 農漁村綜合開發과 그 支援計劃을 樹立 施行토록 하고 地域間 均衡經濟의 達成과 農水産物의 價格安定을 위해서 需給均衡과 流通構造改善에 國家가 努力하도록 條項을 新設 明示하였으며 案第127條에 科學技術의 革新과 情報 및 人力開發을 위한 國家의 努力을 明文化하였습니다.

끝으로 憲法改正의 施行과 관련한 附則條項에 있어서는 이 憲法의 施行日을 現行憲法에 의한 大統領의 任期가 終了되는 날의 다음 날인 1988年2月25日로 함과 아울러 이 憲法 施行에 필요한 法律의 制定 改正과 이 憲法 施行에 관한 準備는 이 憲法 施行 전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憲法에 의한 최초의 大統領 選舉는 이 憲法 施行日 40日 전까지 실시하며 최초의 大統領의 任期는 이 憲法 施行日로부터 開始하도록 하였으며 이 憲法에 의

한 최초의 國會議員 選舉는 이 憲法公布日로부터 6月이내에 실시하며 최초의 國會議員의 任期는 總選舉후 이 憲法에 의한 國會의 최초의 集會日로부터 開始하고 이 憲法公布 당시의 國會議員의 任期는 國會의 최초의 集會日 前日에 終了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이 憲法에 의하여 選任方法이나 任命權者가 변경된 公務員과 大法院長 및 監查院長은 이 憲法에 의하여 後任者가 選任될 때까지 그 職務를 행하며 그 任期는 後任者가 選任되는 前日까지로 하고 이 憲法 施行 당시의 公務員과 政府가 任命한 企業體의 任員 및 이 憲法 施行 당시의 一般法官은 이 憲法에 의하여 任命된 것으로 함과 아울러 이 憲法中 公務員의 任期 또는 重任制限에 관한 規定은 이 憲法에 의하여 최초로 選任된 公務員부터 適用하도록 하였으며 이 憲法 施行 당시의 法令과 條約은 이 憲法에 違背되지 아니하는 한 그 效力을 지속하며 이 憲法에 의하여 새로 設置될 機關의 權限에 속하는 職務를 행하고 있는 機關은 새로운 機關이 設置될 때까지 存續 그 職務를 행하도록 規定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 憲法改正案의 改正趣旨와 그 內容을 說明드렸읍니다마는 이 說明에서 言及되지 아니한 部分은 대부분 現行憲法의 內容이 改正案에 그대로 受容되어 있으며 간단한 一部條項 및 字句의 改正內容은 여러 議員님들에게 配付해 드린 油印物을 參考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췌로 264人의 與野議員께서 共同發議 提案한 이 歷史的인 合意改憲案을 절대적인 贊成으로 可決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憲法改正案의 提案趣旨說明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議長 李載滯 다음은 質疑順序입니다마는 質疑申請한 분이 없으므로 討論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討論할 議員의 發言時間은 國會法 第9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30分까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申敬說議員나와서 反對討論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敬說議員 新韓民主黨의 申敬說議員입니다.

오늘 歷史的인 大韓民國憲法을 改正하는 改

正案을 發議가 되어서 이 자리에서 贊反討論을 통해서 議決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本議員이 생각했기 때문에 本議員은 현재 改正된 改正案에 대해서 反對의 뜻을 표했던 議員입니다.

그러면 反對했던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나마 우선 말씀을 드리고 원히 드러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좀 많이 중복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先輩 同僚議員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원래가 30餘年間을 오직 內閣責任制만을 위해서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內閣責任制가 하루아침에 大統領直選制로 탈바꿈이 되어서 오늘 264名의 議員들로 하여금 大統領直選制 發議에 대해서 오늘 贊成을 해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우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새로 改正된 憲法前文에 뭐가 있는냐 하면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民國은 3·1運動으로 建立된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과 不義에 抗拒한 4·19民主理念을 계승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上海臨時政府의 法統이라는 것은 바로 內閣責任制 法統인 것입니다.

그런데 大統領直選制의 憲法前文에다가 內閣責任制의 法統인 上海臨時政府의 法統인 內閣責任制를 거기에다가 꼭 심어야 하느냐 이것이 하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大韓民國이 臨時政府의 法統은 지금으로부터 68年前 1919年4月11日 制定된 大韓民國 臨時政府의 臨時憲章 第2條에 보면 大韓民國은 大韓民國 臨時議政院의 議決에 의해서 此를 統治한다 라고 明示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그 權力構造는 內閣責任制였다는 것을 여러 議員들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臨時政府의 法統을 內閣責任制의 法統을 現在 大統領直選制 改憲하는 마당에서 憲法前文에 넣어야 하는 理由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憲法改正特別委員의 한 사람으로서 反對해 왔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우리 野黨을 하는 同僚議員들은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內閣責任制가 과연 무엇이나 하는 것을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라는 것을 밝히고 꼭 넘어가야 하겠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19年4月11日 制定된 大韓民國 臨時政府의 臨時憲章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大韓民國은 臨時政府가... 臨時議政院의 議決에 의해서 此를 統治한다 라고 規定하여 內閣責任制 制度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 初代 臨時政府의 指導部 序列은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國務總理인 李承晚博士보다 臨時議政院의 議長인 李東寧先生이 優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李東寧先生은 內閣責任制下에서 儀禮的인 權限을 지닌 大統領格이었었고 李承晚博士는 實質的 權限을 지닌 國務總理格이었었습니다.

그 후 李承晚博士가 美國에서 大統領이란 稱號를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上海 臨時政府에서는 實下는 大統領이 아니므로 大統領이란 稱號를 써서는 안된다 라는 警告文까지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著名한 民族史學者인 丹齊 申采浩先生 같은 분은 李博士에 대한 彈劾을 主張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후 民族主義者와 社會主義者가 提携해서 白凡 金九先生을 主席으로 해서 1944年4月22日 새로 發足된 臨時政府도 內閣責任制의 政體를 분명히 採擇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臨時憲章에 의하면 主席과 副主席 國務委員은 臨時議政院에서 選出하고 臨時議政院은 主席과 副主席 國務委員을 不信任決議를 할 수 있다 라는 決議權이 그때에 明示가 되어 있습니다.

그 후 5·10 制憲國會議員 選舉에 不參했지만 白凡 金九先生이 領導하던 韓國獨立黨도 內閣責任制를 政綱政策으로 내세웠던 것입니다. 따라서 內閣責任制는 우리 政治風土에서 전혀 생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日帝때부터 우리 民族의 한결같은 念願이요 歷史의 소명이요 民族의 宿願이었다는 사실을 여러 議員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內閣責任制는 우리 國民과 政治史에 悲願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지난 韓國의 우리 野黨史는 內閣責任制를 구현하기 위해서 오직 鬭爭했다는 鬭爭史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후 1948年 制憲國會에서 憲法를 制定할 당시 韓國 野黨의 元祖 뿌리라고 할 수 있는 韓國民主黨이 內閣責任制를 政綱政策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黨首는 仁村 金性洙先生이었습니다. 그 당시 高大 法大學長이던 俞鎮午博士에게 지시해서 內閣責任制 改憲草案을 작성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制憲委員들도 거의 대부분이 內閣制를 贊成하여 內閣責任制 憲法案이 거의 確定的으로 採擇될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李承晚博士가 美國式의 大統領 中心制를 고집하여 결국은 仁村先生은 政府樹立의 긴급이라는 그러한 大義에 쫓겨서 자신의 주장을 굽히고 결국 李承晚博士의 고집에 양보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制憲憲法은 하룻밤사이 內閣責任制에서 大統領中心制와 內閣責任的 要素가 혼합된 형태의 憲法으로 畸形的인 탄생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憲政史가 그 후 겪은 듯한 悲劇은 여기에서부터 잉태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政府樹立후 李承晚博士가 獨裁政治의 길을 걷게 되자 韓國民主黨이 發展的 解體를 하여 李承晚政權에 대해 野黨의 旗幟를 들었던 民主國民黨 民國黨 그 당시 黨首가 海公 申翼熙先生이었습니다. 1950年1月 內閣責任制 改憲案을 制憲國會에 提出했으나 李承晚政權에 買收되고 懷柔되고 그런 國會議員들에 의해서 결국 否決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후 6·25動亂이후에 1952年 2代 大統領選舉를 앞두고 당시의 憲法에 의해 國會에서 大統領을 選舉하게 되면 당시 國會의 분위기로 보아서 當選될 가망이 없었던 李承晚大統領은 1951年 11月 大統領 國民直選制 改憲案을 國會에 提出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國會는 1952年 1月 在籍議員 175名중 贊成 19票 反對 143票 棄權 1票라는 壓倒的 多數票로 이를 否決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맞서 2代國會 당시 在籍議員 175名의 3分の 2가 넘는 124人의 이름으로 內閣責任制 改憲案을 國會에 提出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태가 벌어지자 李承晚博士는 憲法에도 없는 國會 召還運動 나아가서는 解散運動을 닦벌레 白骨團 民衆自決團이라는 해

괴 망칙한 이름의 團體로 하여금 마구잡이로 「테러」를 하고 마구잡이로 잡아 가두고 그 당시 國際共產黨事件을 조작해서 內閣責任制 推進追從議員 10名을 긴급 拘束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의 副統領이던 仁村 金性洙先生은 李承晚博士의 獨裁的 行패에 항의하여 副統領을 辭退했다가… 副統領職을 辭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李承晚博士는 당시 國務總理이던 張澤相씨와 內務長官이었던 李範奭씨를 앞세워 2代 國會議員들을 懷柔하고 한편으로는 압력을 넣어서 이른바 發榮改憲案이라는 것을 通過시켰던 것입니다.

그리해서 國民의 直選에 의해서 2代 大統領에 當選되었던 것입니다.

3代國會에서 이른바 四捨五入 改憲案이 通過된 후 民主化를 위하여 國民黨을 母體로 하여 새로운 野黨으로 출범했던 民主黨 初代 代表最高委員 海公 申翼熙先生은 內閣責任制를 政綱政策으로 내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1956年 3代 大統領選舉에서 海公 申翼熙先生과 1960年 4代 大統領選舉의 維石 趙炳玉博士는 各各 內閣責任制를 選舉公約으로 내세워서 國民들의 壓倒的인 支持를 받아서 政權交替를 이룩하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그 두분은 불행하게도 選舉運動 기간중에 逝去하시고 말았습니다. 우리 國民과 野黨의 內閣責任制의 悲願은 좌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4·19革命으로 內閣責任制 改憲이 이룩되어 이 나라에서 처음으로 內閣責任制가 實施되었던 것입니다. 內閣責任制 憲法下에서 당시 우리 國民은 檀君以來 최대의 자유를 누렸으며 「데모」 萬能風潮도 한물 가라앉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內閣責任制가 뿌리를 내리는 듯 했으나 政權에 野慾을 지닌 소수의 軍人들에 의해 內閣責任制는 송두리채 뿌리뽑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朴正熙將軍이 「구테타」를 陰謀한 것은 張勉博士의 民主黨 政權이 탄생한 후 불과 10日도 안 되어서 었었습니다.

따라서 5·16軍事 「구테타」의 명분을 內閣責任制 政治의 실패에 연결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張 勉政權時 民主黨 舊派가 새로 創黨했던 新民黨 金度演博士 玉溪 柳珍山先生도 內閣責任制를 政綱政策으로 채택하였던 것입니다.

5·16 主動勢力은 자기네들의 政權 장악 명분을 內閣責任制의 실패에 돌리는 방향으로 弘報戰을 大的으로 폈던 것입니다. 5·16이후 우리 國民들의 뇌리에는 內閣責任制는 西歐 先進國에서나 실시할 制度이지 우리 나라 실정에는 맞지 않는 制度로 先入觀을 가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5·16野黨은 少數議席으로써 內閣責任制 改憲은 도저히 엄두도 못 내었고 또 大統領病에 걸린 몇몇 野黨指導者들 때문에 지난날 野黨의 최고 政綱政策이었던 內閣責任制를 스스로 붕괴 버리는 과오를 범했던 것입니다.

10·26事態後 維新憲法을 廢止하고 改憲을 論議할 때 兪鎮午博士 金哲洙教授등 양식있는 憲法學者들과 法曹人들은 우리 나라의 民主政治의 發展과 地域對立의 과열을 막기 위해서는 絶對적으로 內閣責任制를 채택해야 한다고 主張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大統領病에 걸린 野黨 指導者들과 維新體制의 大統領 間選制에 대한 反作用으로 생긴 내손으로 직접 大統領 한번 뽑아 보았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일부 國民의 輿論에 밀려서 內閣責任制 主張은 외로운 외침으로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5·17直前과 같이 理性이 마비된 상황아래에서는 양식의 소리가 메아리쳐 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5·17로 어떠한 事態가 발생하여 오늘날 第5共和國 탄생이 되었느냐 하는 것은 여가 앉아 제시 여러 議員님들이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저희 新民黨에서는 이것이 國民의 大輿望이고 國民의 大和合이고 그러한 內閣責任制라면 可及的 양보라도 해주자 이렇게 입을 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新民黨에서 내놓은 案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12條 保安處分 存置하는 문제입니다. 裁判에 의하지 않고 어떻게 保安處分을 말할 수 있느냐? 물론 法律에 의하지 않고서는 保安處分 強制勞役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끝까지 저희들은 廢止 主張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63條 國務委員 解任決議建議案입

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解任決議權입니다. 이것을 저희 案을 들어 주지를 앉았습니다.

그리고 70條 大統領 任期 5年입니다. 이것은 지금 後進國인 「베네주엘라」같은 나라 「우루과이」같은 나라에서만 통용되는 制度인 것입니다. 中進에서 先進의 문턱에 선다고 하는 우리 大韓民國이 이제 그러한 後進國의 「스타일」을 導入을 해서 後進國의 制度를 따라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개탄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勤勞者의 企業參與權입니다. 이것이 認定이 안 되었습니다. 또 勤勞者의 利益均霑權도 認定을 못 받았습니다. 制憲憲法 18條에도 보면 法律의 정하는 바에 의해서 勤勞者의 利益을 보장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憲法改正하는 데서 勤勞者의 利益均霑權을 認定을 안해! 勞動三權을 認定 안해! 이것이 큰 모순입니다. 또 - 하나 모순은 78條에 보면 「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務員을 任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現行 53條에 보면 「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務員을 任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維新憲法도 「任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여기다 罷免權까지 주느냐 이것입니다. 免字가 왜 붙느냐 이것입니다. 任命權만 가지고서도 大統領이 罷免도 시키고 마음대로 했습니다. 굳이 任命이라는 免字를 넣으려면 下位法이나 公務員法에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憲法이 조금 전에 우리 蔡汝植 委員長께서 國民의 各界各層의 輿望을 收斂했고 憲特에서 滿場 致로 成案한 改憲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憲特에서 4次 會議때 全國 都市 7個 都市에서 公聽會를 한번씩 갖자라고 決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다고 이것을 묵살해 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서울에 한번이라도 열게 해 주시오 제가 主張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委員長께서는 한번 研究 檢討를 해 보자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國民의 憲法이 어떻게 돼서 公聽會 한번도 못 여는 이런 것을 國民의 憲法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反對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코자 합니다.

한마디로 民正黨과 民主黨 8人會談이 이憲法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國民을 위한 國民의 憲法이 아니고 黨對黨 政治會談을 통해서 密室에서 8人會談이 주물러서 만들어 놓은 것이요. 黨憲 黨規 그 사람들 黨의 黨憲 黨規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國民의 憲法이라고 이것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大統領直選制에 대한 矛盾點을 몇 가지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平和的 政權交替가 매우 어려우며 國民이 직접 政府를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大統領이 民意를 이유삼아서 獨裁化할 때는 이를 牽制할 수 있는 制度的 장치 없이 때문에 1人獨裁를 인정해 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 바로 大統領 直選制의 矛盾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政黨政治와 責任政治의 구현이不可能하며 地域感情을 극도로 과열 조장한다는 이러한 矛盾도 담겨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막대한 國力消耗을 초래해 가며 流言蜚語 捏造등 社會混亂을 極甚化시키며 國民 階層間의 갈등을 잠재시킨다는 큰 矛盾이 또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數千億원의 財政을 낭비해가며 物價上昇을 부채질하여 「인플레이」현상을 가중시킨다는 점이 또 하나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民主化와 政治發展을 둔화시킴으로써 「쿠데타」의 구실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經濟的 측면에서 본다면 通貨安定을 계속 위협하기 때문에 勞使紛糾과 같은 각계각층의 慾求噴出이 날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어렵다는 것을 맞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나라에 大統領中心制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지난 憲特委員會에서도 全體會議에서도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나라 憲法前文에 弘益人間的 開國理念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 나라는 한마디로 5,000年の 歷史를 가졌다고 합니다. 5千年の 偉大한

歷史 偉大한 民族이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5千年 歷史의 根源이 어디에 있는냐 지금 檀紀 4320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정신을 담지 못했느냐 이것을 담자고 제가 해결을 했습니다. 제가 起草委員 열사 함에서 9對1로 싸웠어요. 통하지 않아요. 이런 것 한자를 못 고칩니까?

그리고 그 당시 여러분도 살아시다시피 光復이후 上海臨時政府가 넘어 온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海公, 金九先生 李承晚博士는 個人資格으로 韓國에 돌아 왔던 것입니다.

그 때에 美·蘇共同委員會에서는 韓國은 自治能力이 없기 때문에 信託統治를 통해서 統治를 해야겠다 라고 信託統治案을 내놓았습니다.

그 때에 金日成이도 이를인가 反對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蘇聯에서 指令을 받고 와서 이것 안 되겠구나 그래 가지고 贊託을 해서 傀儡政府가 樹立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는 그 당시 많은 愛國者들 反共闘士들이 反託運動을 통해서 民族自主精神에 입각한 大韓民國獨立建國理念 大韓民國獨立이 그 때에 비로소 建立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民族 民主 自主精神에 의한 建國精神과 理念은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관철이 안 되었어요.

또 하나는 6·25事變때 倭館까지 後退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죽어간 國民이 무려 UN軍을 포함해서 300萬이라는 이러한 엄청난 國民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 6·25動亂에서 發現된 自由守護精神을 여기다 넣자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관철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1運動으로 建立된 大韓民國 臨時政府의 法統과 不義에 抗拒한 4·19 理念을 繼承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을 넣을 바에는 당연히 弘益人間的 開國理念이라는 것이 마땅히 들어가야 한다 라고 本議員은 생각했기 때문에 끝까지 이것을 주장했으나 관철이 안 되고 오늘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도로써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러 議員들께서 그 동안 지루하시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野黨하던 사람들은 野黨史가 바로 議員內閣責任制 具現 鬭爭史였다는 것을 아시고 세 反對意見을 제가 動議합니다. 여기에 많은 再請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써 反對討論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載灑 申議員의 反對討論이 있었고 또 國會法대로 하면 贊成討論이 나와야 하는데 구내에 贊成討論을 發言하겠다고 申請한 분은 안 계십니다.

李哲承議員이 反對討論을 申請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李哲承議員의 反對討論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發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哲承議員 李哲承입니다.

존경하는 議長 그리고 친애하는 同僚議員 여러분!

이 12代 國會를 사실상 마감하고 第9次 改憲案을 通過시키게 되는 오늘 이 歷史的인 순간에 解放後 反共立國에서부터 反獨裁民主鬭爭을 거쳐서 줄곧 이 나라 命運과 삶을 같이 했던 本議員으로서 내일의 國家 運명을 좌우하는 오늘 이 政治現狀에 대해서 깊이 느낀 바가 있기 때문에 政治人의 다같은 自省과 省察을 기대하면서 몇 말씀 드리려고 이 사리에 나온 것입니다.

이번 改憲案의 내용과 成案節次를 놓고 볼 때 그것이 건전한 憲政秩序를 향해 가는 출발이라고 보기 보다는 벌써 또 다른 새로운 改憲을 自招하는 씨앗을 뿌리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때 경종을 울리지 않을 수 없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政權의 利害關係가 크고 급하다 하더라도 실을 바늘에 매서 쓸 수는 없을 것입니다.

自由民主主義의 憲法精神과 慣行은 多數決의 原則에 少數意見을 적극 수렴하고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民主化의 天國을 낭상이라도 열 것인양 6·29宣言을 한 民正黨과 오래동안 少數黨의 스러움을 누구보다도 뼈에 사무치게 느꼈던 第1野黨인 民主黨의 첫 작

품이 56席이나 되는 第3黨의 의견을 묵살하고 완전히 國會法을 피해 가면서 憲法의 公開討論조차 없이 密室에서 憲法修正案을 急造해 냈으니 이것이 어찌 憲法에 正當性이 있다고 후세에 얘기 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나와 말씀하신 申敬說議員께서 具體的인 좋은 얘기를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될 수 있으면 중복을 피하려고 그러합니다.

議員同志 여러분!

改憲案의 내용을 보면 一言以蔽之하고 21世紀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產業社會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번에 通過하는 改憲案은 62年 5·16軍政初期 第3共和國의 憲法으로 완전히 되돌아간 것입니다. 별로 具體的으로 따져서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은 大統領 5年單任制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5年單任制라고 하는 것은 政治에 있어서 극히 웅색한 것을 露呈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實質的으로 앞으로 20世紀를 지향하는 다양한 社會를 수렴하는데 있어서 民主發展의 뿌리를 내리는 劃期的인 흔적을 이번 改憲案에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大統領의 權力獨占可能性은 單任制 사람만 바꾸는 憲法外的인 前提를 빼고라면은 여전히 그대로 그 可能性은 溫存하고 있는 것입니다.

本人은 지금 불행하게도 大統領中心制와 直選制가 「링크」되어 있어서 連繫되어 있어가지고 이 憲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大統領直選制와 大統領中心制하고 分離 調和 調整할 수가 없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무척 고민하고 고심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2·12總選舉 20餘日을 앞두고 新民黨을 創黨할 때 병풍노릇을 한다고는 했지만 政策面에 있어서 이 憲法問題에 대해서는 상당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全黨大會때에 附帶條件을 붙여서 우리가 選舉 앞두고 國民이 자기 손으로 大統領을 뽑는다는 것은 얼마나 매력적이나 펍 인기있는 것이지만은 得票하기도 좋은 것이지만은 그것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大統領中心

제를 어떻게 權力構造를 해결할 것이냐 이 문제 때문에 創黨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全黨大會 附帶條件 밑에서 選舉를 치르고 나서 權力構造를 다시 논의하고 憲法問題를 진지하게 다루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選舉後에 우리 新民主黨에서 진지하게 그 憲法을 다루지 못하고 東橋洞 上道洞 派閥이 나누어져가지고 그냥 답새는 바람에 直選制 直選制 바람에 진짜 걱정해야 할 憲法의 기타 여러 중요한 부분과 동시에 權力構造問題를 다루지를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新民主黨에서 낸 憲法도 3次 共和國의 憲法이 大統領은 重任하기로 했어 1회에 한해서 重任하기로...

30年間 20年間 經綸있는 指導者들이 政治를 맡아가지고 잘 하면 國民의 審判을 받아가지고 1회에 한해서 重任할 수도 있어!

이러한 주장을 냈는데 어느 세에 지금 그랬던 野黨 지금 民主黨과 民正黨이 한 번씩 나누어서 하자는 그런 격으로 5年制 單任制로만 바꾼 것뿐이지 다른 것은 發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大統領直選制가 魅力的이고 꼭 바람을 일으키는데 바람政治하는데 답새는 데는 꼭 效果的인 魔力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동안에 40年 憲政 누더기에서 가장 시달린 것이 1人體制 大統領獨裁體制 靑瓦臺政治 이것을 어떻게 拂拭해야 할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論議를 못하고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序頭에 말한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9次 憲法을 改正하지만 벌써 이 문제를 완전히 인식하고 여기에 대한 對備를 할 能力을 우리가 政治·文化의 力量을 가지지 못할 것 같으면 곧 이어서 10次 改憲論爭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保障할 수 있습니까?

大統領 1人을 위한 裝飾品에 40年 大統領政治에 있어서 獨裁에 시달렸던 과거의 經驗을 반추해볼 때 政黨 立法 司法府등 牽制機構가 한낱 大統領 1人을 위한 裝飾品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行政府의 勢力과 立法府의 勢力이 均衡을 못하였을 때 그 衝突이 일어

났을 때에 憲政의 膠着狀態를 무엇으로 打開할 것인가 無責任한 公約 濫發과 地域感情의 誘發 數千億이 넘는 選舉資金 撒布 그것으로 인해서 選舉後의 經濟的 社會的 混亂 中傷 謀略등 바람政治·싸움이 政治風土를 어떻게 拂拭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政黨政治와 責任政治가 구현되고 政治的 進歩와 保守가 國家를 위하여 相互 調和와 均衡을 이룰 수 있는 議院內閣制가 우리 現實에는 더 合當할 것이라는 多數의 意見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直選制만이 正當性을 가진다 直選制가 아니면 民主化라고 할 수가 없다 하는 이런 強迫的인 반쪽 論理로 우리가 싸우다가 흩어지다가 12代國會는 오늘날 마침내 저물고 말았습니다.

이번 改憲案을 보면 投票者 過半數 以上の 支持를 얻지 않아도 大統領이 될 수 있습니다.

與野 政治人들의 政權놀이 計算된 一致로서의 合意된 것인지는 불라그러되 지금 우리가 보듯이 大統領候補가 4巴戰 혹은 5巴戰이 될는가 모릅시다마는 이러한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누구도 20%에서 30%정도의 支持밖에 얻을 수 밖에 없다는 算術的인 結論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過半數의 缺如는 少數의 意思가 多數 過半數를 얻지 못할 때에 少數의 意思가 多數를 支配 또는 統治하는 것으로서 이는 必死的으로 多數의 抵抗과 排戰에 부딪히게 되어 政府의 無氣力과 政治·社會의 不安 國家發展의 저해를 초래할 때에 直選制 正當性을 무엇으로 辯明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즈음에 軍政終熄이라는 口號를 내걸음니다 軍政終熄... 그것도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獨裁終熄은 어떻습니까? 獨裁終熄에 대한 口號도 더 優先的이 아니겠느냐 이 사람은 그렇게 믿어 마지않는 것입니다.

直選制와 宿命的으로 연결된 大統領中心制는 勝者 獨善으로 專制를 낳았고 그 專制는 生死決斷을 요구하는 革命的인 抵抗을 유발했으며 그 惡循環속에서 우리 民主主義는 죽어가야 했고 오늘날 이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經濟的 水準은 2,000弗 3,000弗 先進을 따라가고 있지만 政治的 水準은 왜 우리가 이水準에 있느냐? 釜山政治波動 때... 불과 戰爭 때 50弗밖에 없을 때도 우리는 內閣責任制를 위해서 싸웠던 것입니다. 地方自治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따라서 이와 같이 直選制에 의한 大統領 獨裁의 合法性을 두는 方法으로 統制할 것이며 설령 그 統制를 한다 하더라도 場外政治외에는 무슨 手段이 또 있겠습니까? 場外政治外에는... 韓國은 美國과도 다릅니다. 美國의 政治 文化와 能力·傳統이 우리는 그 國民이상의 大統領도 없고 그 國民이하의 大統領도 없다고 나는 항상 얘기를 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이 憲法에 있어서는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安全瓣을 달지 못하고 나간다면 대단히 깊은 우려를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申議員이 말씀도 했습니다마는 중요한 몇가지 法律이 그 8人委員會에서 同意된 대로 下位法으로 돌려놓고 말았습니다. 下位法으로 중요한 法案이 돌리고 만 것은 언젠가는 이것이 惡法化될 소지를 내포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한 경고해 두어 마지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 民正 民主 兩黨은 政權이라는 小義때문에 民主化라는 大義를 얼마 만큼 저버렸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證明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本人은 議員內閣制를 강력히 주장했거니와 지금도 그 所信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選舉結果가 어찌 되었든간에 聯立內閣을 구성할 수 있는 政府와 國會의 衝突 그리고 憲政中斷을 豫防할 수 있는 그 智慧와 制度裝置를 지금 이 순간부터 對備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은 民主主義를 한다면서 그 民主政治의 牽引車 역할을 해야 할 民主的 政黨이 이 나라에는 없습니다. 이 나라의 政黨은 모두가 이름뿐이고 實際는 國民과 아무런 有機的인 基盤을 갖지 않은 政派「보스」들 統制下에서 政治的 下請集團으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議員 여러분! 北韓의 憲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네들은 「맑스 레닌」의 思想에다

가 金日成이가 만들어낸 主體思想을 配合시켜 가지고 완전히 「프롤레타리아」 獨裁政權을 확립한 뒤에 社會主義化가 된 뒤에 外勢를以南에서 美軍을 撤收시키고 赤化統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以北 憲法의 要所所에다 明記가 되어 있습니다.

以北의 基本目的은 뭘니까? 우리나라의 美軍撤收를 통해서 赤化統一입니다.

40年동안 추호 半點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憲法에 있어서 아까 申敬說議員이 말씀한 바와 같이 그 憲法을 이번 에 整備한다 할 것같은데 이 此際에 그야말로 精神을 차렸다면 그 基本的인 有始有終으로 整備가 되었어야 할 것인데 여러분! 아까 蔡汝植委員長께서는 무슨 抵抗權을 들고 나오니까 무서워서 어찌고 어찌고 또 光州事件을 들고 나오니까 어찌고 어찌고 4·19를 들고 나오니까 어찌고 어찌고 그래서 뭐 不義에 抵抗은 4·19 또 臨時政府 法統 이렇게 얘기해서 잘 한 것같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申敬說議員의 얘기가 얼마나 句句節節 울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大韓民國을 가늠케 했던 聯合國의 굴레를 벗어나게 한 自主的 鬭爭이라는 것은 反託運動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大韓民國이 建立되었어! 그것 때문에 UN의 決議에 의해서 6·25 때 UN軍이 參戰한거야!

여러분! UN軍이 參戰했을 때 「워커 라인」에서 大邱의 八公山에서 박격포를 쏘니까 申性模 國防長官이 밤새 釜山으로 도망갔어!

그럴 때에도 우리 青年 學徒兵들은 倭館 昌寧 浦項 安康 杞溪... 軍番도 없이 훈련도 안받고 전부 소모품으로 희생되었어! 300萬의 희생에다가 數萬의 青年 學徒들의 희생이 南侵을 한 金日成의 赤化統一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댓가없이 殉國을 한 고귀한 이런 自由守護의 그네들의 댓가를 어디다가 우리가 표시해 주었느냐?

여러분! 오늘날 이와 같이 傷痍軍警이나 軍警遺家族이나 혹은 젊은 學徒들이 6·25 때 희생한 것은 물론 6·25 경험자들이 점점 數가 줄어가서 7割도 6·25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마는 이것을 이렇게 잊어버릴 수

있고 이렇게 무대접할 수가 있느냐 이거에
요.

그래서 反託精神하고 6·25의 自由精神을
以北의 憲法같이 는 않더라도 그래도 그 精神
만은 뚜렷하게 憲法前文에 넣어야 할 것이 아
니냐고 解放後에 建國運動한 元老들이 老軀를
무릅쓰고 各 政黨을 순례하고 憲法特委에 일
일이 찾아 다녔건만 여러분은 8人委員會에서
覺書를 쓰고 密約을 했기 때문에 置之度外視
하고 성실하게 보여주지를 않고 그것을 고치
지 못하고 前文을 이렇게 고쳤다 이것은 歷
史的인 審判을 여러분이 받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以北은 이 나라를 마지막으
로 赤化統一하기 위해서 두 가지 戰略을 세
우고 있어요. 하나는 美軍을 撤收시키고 그
다음에는 자기들이 美國과 日本과 獨自的인
外交關係를 갖고 그러기 위해서는 當面의 戰
略戰術에 있어서는 모든 騷擾事件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民族正統의 세력을 부정하고 「올
림픽」을 방해하고 勞使紛糾나 學園紛糾強化를
시켜 가지고 혼란을 일으켜서 反體制로서 大
韓民國을 第2의 越南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
이 以北의 基本精神이 올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호랑이
가 물어가도 精神을 바짝 차려야 사는 것인
데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인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외면을 한다는 우리
의 자세는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것을 우리
심심하게 반성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
니다.

친애하는 議員同志 여러분!

86年 初에 政府 與黨은 89년의 改憲意思를
발표한 바 있었읍니다. 이에 대하여 本人은
즉각 記者會見을 통해서 改憲案을 포함한 第
1次 時局收拾案을 제시한 바 있었읍니다. 첫
째로 國會에서 憲法特委를 빨리 만들어라 그
리고 둘째 選舉法 地自法 言論基本法을 改正
하고 赦免復權 등 民主化措置를 즉각 시행할
것을 주장하였읍니다. 그 후 與黨은 갑자기
權力集中型 內閣責任制를 제시하고 이에 맞서
서 新民黨은 大統領中心直選制를 주장하고 서
로 첨예화한 대결과 양상으로써 치달아 결국
은 民主化의 可能性은 요원해 멀어가고 있었
던 것입니다. 이 때 本人은 民主發展을 위
한 돌파구를 또 한번 마지막 찾기 위한 중

정과 급박한 狀況認識에서 今年 2月19日 다
시 記者會見을 통해서 第2次 時局收拾案을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執權與黨은
그 政治的 未熟性和 强化的 行태로서의 民主
化를 선도하지 못한 責任을 져야할 것이다.
광범위한 赦免復權 拘束者 釋放등 일대 國
民和合을 도모함으로써 새로운 政治의 형성을
가능케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公正選
舉制度만 보장된다면 누가 大統領이 되고 누
가 首相이 되든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特定 權力構造問題에 연연하지
말고 진정한 責任政治가 구현되는 制度를 선
택해야 한다고 그 핵심은 公正選舉管理를 위
해서 汎 國民協議體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
했읍니다.

그럴 때 記者質問에 나는 내 個人的 所信
이라고 그래서 先代에서부터 내려온 內閣責任
制가 내 個人的 所信이라고 밝혔던 것입
니다.

이러한 兩次에 걸친 民主化 先行을 通한
時局收拾案을 두고 당시 新民黨의 黨權을 쥐
고 있던 東橋 上道 兩 陣營에서는 나의 견
해가 黨論 違背라고 못박고 급기야는 除名이
라는 징계를 획책했읍니다. 마침내 이를 구
실로 分黨까지 하고 新黨을 創黨했던 것입
니다. 그 때 本人은 또 記者會見을 통해서
兩派가 分黨한다는 그것은 그들의 自由일 것
이다. 그러나 금후 그 分黨이 다시 그들까
리의 分黨을 자초할 것이 明若觀火할 것이며
分黨은 反國民的인 背信行爲라고 엄숙히 우리
는 그 때 지적했던 것입니다.

議員同志 여러분!

이 議事堂에 앉아 있는 우리들은 대부분이
特定 政黨의 黨員으로 立候補하여 當選되어
모인 代表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票는 그 政黨의 候補者들에게
던져주었던 것으로써 選舉民에게 黨員으로서의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政黨政治의 기초임은 누구도 의심하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래의 事態를
보면 한 任期 동안에도 두어서너번 黨을 옮
기는가 하면 政黨은 번번히 離合集散을 하고
있읍니다. 黨內 民主主義는 제대로 실천 못
하고 있는 이러한 작태를 볼 때 民主化나
政黨政治는 한낱 緣木求魚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議員 여러분!

自由民主主義의 중심체가 되어야 할 바로 이 議事堂이 自由民主主義를 파괴하는 反體制人士들이 만일 모였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극단적인 利己主義와 機會主義로 公人으로서 취해야 할 모든 規範을 송두리채 깰고 있는 바로 이 판국이 左傾容共分子들의 온상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안으로는 金日成集團의 구조가 백주에 난무하고 漁船이 北傀에 의해 침몰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이된 영문인지 이 議事堂에서는 決議文하나 내놓지 못할뿐 本人은 이런 상태를 보고 통탄 해 마지 않습니다.

지극히 불행한 사실입니다마는 우리 同僚議員의 아들이 北傀에 拉致되었어도 남의 집 불보듯 우리는 가만히 잊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또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北傀는 金日成主義者들은 우리의 核心部分까지 파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政治人들은 이런때 무관심 속에서 안주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얼마전에 日本 社會黨代表가 金日成과 許鏢과 만났을 때 최근 韓國에서 일어난 사태는 自主化和 民主化의 최초의 승리라고 그네들은 公言했습니다.

이런 公開的인 發表를 우리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政治人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냉정하고 심각하게 여기에 대해서 對處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나라가 왜 政治的으로 結果的으로 이렇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政府가 그 責任을 먼저 痛感하여야 할 것입니다.

先驅者는 이슬과 차거운 바람길을 피하지 않습니다. 本人은 지난날의 「베트남」의 패망을 교훈삼아 줄곧 추구해 왔던 中道統合의 政治哲學으로 극단주의를 배격하고 中道勢力의 확장을 통하여 확고한 自由民主主義 理念下에 대화와 타협을 가지고 國政을 이끌 수 있는 政治風土 조성에 힘써 왔으며 또한 극단주의 자들에 의해서 온갖 흑색선전과 모함을 무릅쓰고 한결같이 議會主義를 지켜왔습니다.

끝으로 本人은 이 엄숙한 자리를 빌어...
(發言制限時間 초과로 「마이크」中斷·速記中斷)

.....
(發言時間制限으로 發言을 마치지 못한部分)

○李哲承議員 政治人들의 “자세의 혁명”을 다시 한번 역설해 두는 바이며 앞으로 이 나라의 發展的인 民主政治를 위하여 議院內閣制를 정정당당하게 주장하는 진정한 政黨의 출현이 기대됨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李載瀟 그러면 이것으로 討論이 다 끝났습니다. 곧 表決에 들어가겠는데 議員 한 분이 간단한 身上의 發言을 請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國會生活에 여백이 있으면 좀 짧라도 말씀을 하겠는데 이것저것 생각해 보니까 한 5·6分동안에 그 하소연 한번 들어주는 것도 和合을 위한 憲法을 制定하는 이 마당에 議員 여러분들의 理解가 될 것 같아서 林議員! 林春元議員 나오셔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春元議員 林春元議員입니다.

존경하는 議長 그리고 先輩 同僚議員 여러분! 本議員은 우리나라 憲法을 아홉번째 改正하는 歷史的인 순간에 이 憲法改正의 問題點과 잘못된 각급의 상황을 指摘하면서 또 다시 改憲해야 하는 필연성을 밝혀서 史草로 남기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本議員 역시 憲法改正의 大前提인 大統領直選制에는 전적으로 同意하는 바이지만 이와같은 방법의 憲法改正에는 贊成할 수 없는 事由를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民正黨의 先輩 同僚議員 여러분! 지난 10月5일에 大統領께서 國務總理가 代讀한 施政演說을 통해서 6·29의 盧泰愚宣言과 7月1일의 大統領談話로 劃期的인 政治發展과 國民和合의 큰 門이 열리고 우리 政治史에 새로운 里程碑가 마련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0月6일에는 여러분의 盧泰愚總裁께서 代表演說을 통해서 40年の 政治史에 처음으로 與野合意改憲을 成事시킨 것은 政治奇蹟이라고 강

조하고 16年8個月만에 國民의 손으로 직접 大統領을 뽑게 되었다고 말하고 國民政治의 核心은 공정한 國民審判앞에 누구나 자유롭게 나설 수 있는 競爭性에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競爭의 自由를 확고히 하겠다고 다짐하고 어느 누구도 아무런 제약없이 立候補할 수 있도록 赦免 復權을 포함한 모든 법적 政治的 措置들이 취해졌다고 演說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民正黨은 6·29 이전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었다고 인정해야 하며 競爭의 자유가 어느 누구에게도 보장되었다고 주장한다면 현재까지 赦免 復權되지 않고 있는 文益煥牧師나 수많은 民主人士들은 누구이며 이 나라의 民主化를 주장하다가 지금 이 시각에도 拘束되어 있는 李富榮씨 등 數百名에 달하는 良心囚들은 어느 나라 국민들이란 말입니까?

또한 民主化를 主張하다가 구속된 여러 愛國學生들이 이번에 憲法改正과 大統領選舉를 矯導所에서 구경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계동씨 등 수많은 民主人士들이 오늘도 家庭에 돌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수배중인 채로 거리에 방황해야 하는 이유도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現實이 執權與黨이 金科玉條처럼 사용하는 實定法에 근거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이 나라의 법이 만민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原理를 망각하고 强者에게는 弱하고 弱者에게는 무자비하게 확대 적용되는 모순 다른 아닌 것입니다.

公權力이 진실한 사람을 보호하지 않을 때 대다수의 國民들에게 그것은 법이 아니라 罪惡인 것입니다. 선량한 우리 國民들이 더 이상 法을 지켜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때 부당한 國家權力에 저항할 수밖에 없는 狀況으로 발전되어 法에 의해 刑을 받고 수감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良心의 투쟁으로 인식되도록 이 社會의 價值觀을 뒤바꾸어 놓은 執權與黨 이제부터라도 진정한 자성의 機會를 가져야 할 것이며 무릇 權力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당할 때 지켜진다는 평범한 眞理를 실천하기 위해서 수많은 民主人士들과 青年 學生들에게 釋放과 手配解除 및 赦免 復權을 國民投票 이전에 단행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議長 李載瀟 林議員! 身上發言하다 말고 원고 그것을 꺼내서 해요?

○林春元議員 예. 알겠습니다.

執權與黨 先輩 同僚議員 여러분! 民主化는 口號로 되는 것이 아니며 실천하지 않는 民主化는 또 다른 獨裁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의 우리 國會가 議會民主主義가 아닌 在野民主主義로 전락된 것이 이에 대한 責任을 全적으로 執權與黨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統一民主黨의 先輩 同僚議員 여러분! 本議員은 얼마 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 國會에서 자리를 같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本議員 역시 無所屬으로 머물러 있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議政壇에서 해박한 論理와 강력한 用語를 동원하여 이 政權을 비판하던 수많은 主張들을 경청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本議員은 民主黨의 先輩 同僚議員 여러분들께 뼈에 저린 심정으로 몇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이 사람 역시 金大中선생을 비롯한 民主人士들의 赦免 復權과 良心囚釋放을 요구해왔거니와 주지하시다시피 金大中선생 등 많은 분들이 赦免 復權되고 釋放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在野에는 아직도 많은 人士들이 赦免 復權되어 있지 않고 數百名의 良心囚들이 아직까지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으며 수많은 青年 學生들이 矯導所와 拘置所에 수감되어 있고 또 수많은 人士들이 수배중에 있는데 憲法改正을 論議하기 전에 民主人士들의 赦免 復權과 良心囚 석방 그리고 수배자 해제를 前提로 내세웠던 民主黨이 이런 懸案들의 해결없이 憲法改正에 합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 10月6日 李重載 副總裁께서는 代表演說에서 歷史의 敎訓은 苦難을 통해서 터득된다고 전제하고 反對者들이 排除된 가운데 選舉가 치루어지고 政權이 수립될 경우 그 選舉의 正當성과 그 政權의 正統性問題가 계속 야기될 것이 明若觀火한 바 堂堂하게 겨루는 選舉基盤을 하루빨리 造成해야 할 것이라고 力說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改正되는 憲法은 大統領直選制만 관철되었다고 해서 民主化가 된 것은 아니며

그것은 民主主義를 위한 必要要件일 따름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당분간의 便宜와 理解가 아니라 우리 國家와 民族의 현재와 미래입니다.

政派次元의 利害를 떠나 國民的 合意를 創出하고 그에 따라 改正憲法을 成案하고 發議하여 議決하는 것이 國民의 代表임을 自任하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本議員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의 責務가 이번 憲法改正에 성실하게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懷疑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本議員이 身上發言을 통해서 확실히 해두고자 하는 것은 이번 憲法改正이 民正 民主 兩黨의 理解關係에 따라 이루어짐으로써 第10次 改憲이 또 다시 필요하도록 한 또 하나의 잘못된 政治史를 記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民主黨의 先輩 同僚議員 여러분!

두 분 金선생님을 指導者로 모시고 이 나라를 民主化시키고자 不撤晝夜 獻身해 오신 여러분들이기에 보다 정당한 論理를 주장하고 그 課題를 실천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支持聲援해 온 國民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며 第1野黨으로서의 責務에 부합하는 도리라고 本議員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8人政治會談에서 보면 이제는 民主黨도 在野의 民族的 性向을 排除하고 있다고 이해해야 할 터인데 이처럼 民主黨 스스로 政策政黨이나 또는 理念政黨으로 多元化되어가는 의식을 포용할 可能性을 포기하고 民族的 性向을 追求하는 多數國民들의 입장을 代辯하기를 포기한채로 進行시킨 憲法改正에 비록 大統領直選制가 成就되었다고 하더라도 本議員은 同意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國會議長께 참으로 서운한 마음을 가지면서 이번 憲法改正에 贊成하지 않는 議員으로서 이번 憲法改正이 國會法節次上 잘못 된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즉 지난 9月18일에 李大淳議員外 264人的 憲法改正案 發議는 憲特委員長名義로 發議한 것이 아니므로 憲特幹事인 玄敬大議員의 經過

報告는 명백한 國會法違反이라는 사실입니다.

9月18日 이전의 憲特討論은 議案없이 討論한 것이며 9月18일에야 비로소 國會의 議案으로 發議된 것입니다.

원래 大統領이 發議하든 혹은 在籍議員 2분의 1 이상으로 發議하고 20日 이상의 公告期間을 통한 國民의 輿論을 收斂하여 法司委에서 字句修正 등을 거쳐 本會議에 回附되어야 할 터인데 國會法에 의한 審議나 贊反討論없이 國會를 通過하려는 것은 명백한 國會法違反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蔡汝植議員께서 提案說明도 憲特委員長으로서 提案說明을 하는 것이 아니라 提案者*의 한 사람으로서 提案說明한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法을 立法하는 우리 國會가 法을 지키지 않는다면 歷史는 우리를 어떻게 評價하겠습니까? 참으로 중대한 순간입니다.

議長께서는 이러한 事項을 議事進行에 확실히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國民投票가 끝나면 이 나라의 國民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를 확실히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을 남기면서 本議員의 身上發言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傾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李載灌 여러분들 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討論을 終結하고 表決할 것을 宣布합니다.

이 憲法改正案은 國會法 第105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記名投票로 表決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國會法 第107條第2項의 規定에 따라 監票委員會를 指名하겠습니다.

監票委員會으로는 鄭男議員 金榮龜議員 任斗彬議員 金重緯議員 金正吉議員 金聖植議員 韓錫奉議員 鄭始鳳議員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指名된 여덟분의 監票委員會는 監票委員會席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投票方法에 관하여 議事局長으로부터 설명이 있는 다음 곧 바로 投票를 시작하겠습니다.

○議事局長 陳在勳 投票方法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憲法改正案에 관한 表決은 주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國會法 第105條第4項에 따라 記名投票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憲法改正案 投票用紙는 뒷면에 記名欄과 可否欄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議員께서는 記票를 하실 때에는 먼저 投票用紙 記名欄에 議員의 姓名을 한글이나 漢字로 정확하게 記載해 주셔야 有效投票가 됩니다. 그리고 可否欄에는 憲法改正案에 贊成하시면 한글이나 漢字로 “可”라고 記載하시고 反對하시면 “否”라고 記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當該議員님께서는 個別的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姓衛이 같으신 議員께서는 반드시 漢字로 記載해 주시고 漢字도 같으신 때에는 記名欄에 所屬政黨을 같이 記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記名投票이기 때문에 記名이 없는 경우에는 無效가 됨을 말씀드립니다. 無效와 棄權의 區分基準에 관하여는 配付해 드린 說明文을 參考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投票하시는 도중에 혹시 姓名 또는 可否를 잘못 記載하시거나 記載內容을 訂正하셔야 할 때는 기히 交付받은 投票用紙를 返納하시고 새 投票用紙를 交付받아 投票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投票方法에 관하여 설명을 마치고 呼名을 시작하겠습니다.

尊稱은 생략하겠습니다.

(16時18分 投票開始)

(議事局長: 議員呼名)

(李載滯議長, 張聖萬副議長과 司會交代)

○副議長 張聖萬 投票 안 하신 분 안계십니까? 投票를 다 하셨습니까?

投票를 다 하셨으면 지금부터 開票를 시작하겠습니다.

(16時36分 投票終了)

(名牌函 및 投票函 閉函)

먼저 名牌函을 열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名牌函 開函)

(名牌數 點檢)

名牌數를 計算한 바 257枚입니다.

다음은 投票函을 열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投票函 開函)

(投票數 點檢)

(張聖萬副議長, 李載滯議長과 司會交代)

○議長 李載滯 投票數를 發表합니다.

投票數는 258枚로 名牌보다 1枚가 많을니다. 名牌를 投入을 안하고 投票紙만 投入을 하고 名牌를 가지고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記名投票가 되어서 어느 議員이 실수한 것을 곧 알게 됩니다.

投票結果에는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그대로 投票結果에 대한 集計를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計 票)

投票結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複道에 계신 議員들 議事堂으로 다 入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投票結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總. 投票者 258票중 可 254票 否 4票 그래서 大韓民國憲法改正案은 憲法 第13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在籍議員 3分の 2이상의 贊成을 얻었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하겠습니다.

(參 照)

大韓民國憲法改正案 贊成議員名單

| | |
|------------|---------|
| 姜慶植(民主正義黨) | 康容植 |
| 姜昌熙 | 高 建 高貴男 |
| 郭正出 | 具龍相 權寧禹 |
| 權翊鉉 | 權重東 金杞培 |
| 金斗宗 | 金文起 金相球 |
| 金淑鉉 | 金 湜 金榮龜 |
| 金永先 | 金榮禎 金容大 |
| 金塔泰 | 金長淑 金在鎬 |
| 金正均 | 金正男 金正禮 |
| 金鍾基 | 金鍾仁 金宗鎬 |
| 金重權 | 金重緯 金 漢 |
| 金泰守 | 金泰鎬 金學俊 |
| 金顯煜 | 金炯孝 羅碩昊 |
| 南在斗 | 南載熙 盧泰愚 |
| 柳瓊賢 | 柳根桓 柳尙昊 |
| 柳興洙 | 朴敬錫 朴權欽 |
| 朴珪植 | 朴東鎭 朴聖泰 |
| 朴翊柱 | 朴在鴻 朴鍾汶 |
| 朴俊炳 | 裴命國 裴成東 |
| 奉斗玩 | 徐廷和 徐廷華 |

| | | |
|-----|-----|-----|
| 宋庸植 | 申相式 | 沈明輔 |
| 沈晶求 | 安甲濬 | 安秉珪 |
| 安永和 | 梁慶子 | 梁昶植 |
| 廉吉正 | 吳漢九 | 王相殷 |
| 禹炳奎 | 俞學聖 | 尹吉重 |
| 李大淳 | 李敏燮 | 李範俊 |
| 李相翊 | 李相宰 | 李祥義 |
| 李成烈 | 李聖浩 | 李世基 |
| 李永旭 | 李榮一 | 李龍鎬 |
| 李龍薰 | 李慈憲 | 李載雨 |
| 李載濬 | 李鍾贊 | 李進 |
| 李贊赫 | 李徹雨 | 李春九 |
| 李致浩 | 李漢東 | 任斗彬 |
| 林芳鉉 | 任煥得 | 張聖萬 |
| 全炳宇 | 全鐘千 | 鄭男 |
| 鄭東星 | 鄭石謨 | 鄭善昊 |
| 鄭順德 | 丁時采 | 鄭在哲 |
| 鄭宗澤 | 鄭昌和 | 鄭顯榮 |
| 鄭好根 | 鄭輝東 | 趙庚穆 |
| 曹淇相 | 趙南照 | 趙尙來 |
| 曹祥鉉 | 趙文 | 趙鍾昊 |
| 池甲鍾 | 陳懿鍾 | 陳治範 |
| 蔡汶植 | 千永星 | 崔明憲 |
| 崔秉烈 | 崔祥鎮 | 崔永德 |
| 崔永喆 | 崔昌圭 | 韓良順 |
| 許清一 | 玄敬大 | 玄鴻柱 |
| 洪性宇 | 洪禹俊 | 洪鍾旭 |
| 洪熙杓 | 姜三載 | 高在清 |
| 權五台 | 金東圭 | 金東英 |
| 金東旭 | 金東周 | 金得洙 |
| 金奉旭 | 金奉祚 | 金聖植 |
| 金守漢 | 金令培 | 金完泰 |
| 金正吉 | 金正秀 | 金泰龍 |
| 金鉉圭 | 金顯秀 | 金炯璟 |
| 金炯光 | 金炯來 | 盧承煥 |
| 柳濟然 | 柳峻相 | 明華燮 |
| 睦堯相 | 文正秀 | 朴寬用 |
| 朴實 | 朴旺植 | 朴容萬 |
| 朴一 | 朴鍾律 | 朴燦鍾 |
| 潘亨植 | 徐錫宰 | 宋元英 |
| 宋千永 | 宋鉉燮 | 辛基夏 |
| 愼順範 | 沈完求 | 安東善 |
| 俞成煥 | 尹榮卓 | 李尙玟 |
| 李永權 | 李英駿 | 李龍熙 |
| 李載根 | 李重載 | 李震淵 |

| | | |
|-----|------------|-----|
| 李哲 | 張基旭 | 鄭相九 |
| 趙炳鳳 | 趙舜衡 | 趙永壽 |
| 趙鍾益 | 趙洪來 | 崔洛道 |
| 崔薰 | 許景九 | 許京萬 |
| 洪思德 | 黃珞周 | 金玉仙 |
| 金漢洙 | 柳甲鐘 | 朴海充 |
| 辛道煥 | 辛秉烈 | 辛達洙 |
| 李健一 | 李敏雨 | 李泰九 |
| 李宅敦 | 李宅熙 | 鄭在原 |
| 韓錫奉 | 姜慶植(한국국민당) | |
| 金光洙 | 金奎元 | 金永生 |
| 金鎔采 | 金一潤 | 文炳夏 |
| 辛敏善 | 申喆均 | 梁正圭 |
| 李大燁 | 李萬燮 | 李奉模 |
| 鄭始鳳 | 趙容直 | 崔容安 |
| 崔載九 | 咸鍾漢 | 黃大鳳 |
| 孫泰坤 | 申東準 | 高漢俊 |
| 金在光 | 朴漢相 | 申宰休 |
| 李基澤 | 李佶範 | 李龍澤 |
| 張忠準 | 鄭在文 | 趙淵夏 |
| 黃炳禹 | | |

.....

參考로 在籍議員 272人中 오늘 결석한 議員은 權正遠議員 吳世應議員 金賢子議員 池運泰議員 金瑋鎬議員 李在玉議員 崔雲芝議員 金孝榮議員 이 여덟분은 IPU總會에 현재 參席中으로 缺勤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病院에 入院中인 李秉稷議員 또 收監中에 있는 金容午議員 그리고 海外旅行中에 있는 柳致松議員 그래서 모두 11人입니다. 그리고 反對投票를 하신 分은 金炳洙議員 申敬說議員 李哲承議員 林春元議員 4人이며 오늘 최초로 本會議에는 出席했다가 投票에는 不參한 議員은 柳漢烈議員 徐鍾烈議員 林鍾基議員 3人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광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名牌보다 投票紙가 한 장 많습니다.

名牌하고 投票하고를 일일이 대조하면 投票紙는 投票函에다 名牌는 名牌函에다 집어 넣지 않고 간 분이 누구인 것을 곧 압니다마는 여기서 그것이 밝혀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議員 同志 여러분!

우리는 마침내 우여곡절을 거쳐가면서 憲法改正案을 通過시켰습니다.

그 心懷가 그동안의 과정을 생각하고 오늘 날 大韓民國이 직면한 현실을 아울러 생각할 적에 어찌 감회가 없다 하겠습니까?

反對討論도 자유롭게 하고 또 따라서 압도적인 찬성 지지도 전혀 아무런 作用을 받지 않고 議員 스스로가 이것을 결심하셨다 하는 것은 大韓民國 建國以來의 制憲憲法 그것을 制定한 以來의 아홉번의 시행한 改憲의 과정 속에서 일찌기 우리 民主政治史 國會史上 없었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오늘 몇 분의 反對討論이 있었고 또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직접 4票의 反對投票와 몇 분의 棄權이 있었읍니다마는 그것도 贊成 못지 않은 아주 소중한 徵表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回顧해 보건대 소위 合意改憲의 범주에 들어가는 일은 이번 이 改憲을 비롯해서 모두 歷史上 세번 있었던 것입니다. 釜山 避難國會에서 행한 소위 拔萃改憲 그것도 형태는 合意改憲으로 맺어졌으며 또 4.19후에 있었던 內閣責任制改憲도 合意改憲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과 지니는 의미가 이번 合意改憲보다 훨씬 다른 것이 있습니다. 264名의 發議에 참여하신 議員들도 그 전에 있었던 두차례의 合意改憲에서 우리가 겪었던 것과 같은 그러한 작용에 의해서 많은 他意가 작용해서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같은 贊票라도 이것은 議會 民主主義 政治史에서 볼 때 대단히 소중한 것이다 그렇게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264名이나 贊成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극히 소수 8名 정도의 反對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指向하려고 하는 보다 더 성숙된 民主主義를 위해서 이것이 또 굉장의 의미를 가진 것이고 기여한 것이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치른 이 歷史的인 행사는 지극히 의미가 있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發議當時에 議員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우리는 이것이 이제 政府에 移送이 되고 다시 公告가 되어서 國民投票가 끝나는 그래서 改正憲法이 發效하는 날로부터 6個月이내 그것은 길게 따져도 12代 國會議員 여러분들 우리의 任期 1年을 갖다 우리 스스로가 단축해 가면서 한 이 課業

이것은 그렇게 적게 評價할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政治人으로서의 義務感 決斷力 犧牲精神이 다 그것을 서슴지 않고 감행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적에 4.19 직후에 內閣責任制 改憲이 그 改憲이 통과되는 그 순간에 國會는 解散되게 될 그때 아무 여유도 안주고 國會議員의 任期가 그것으로 1年8個月만에 그치고 말 그때 이상으로 이것은 소중한 것이다.

왜 그러느냐 4.19가 일어났어! 國會議席의 3分の 2가 넘던 自由黨議員들이 그대로 거기에 앉아서 동조해 준 것 그것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自己意思의 자유로운 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위압 위세 그런 것이 다분히 작용되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 적에 자기 自律的이고 自主的인 판단에 의해서 자기의 任期가 1年以上 그것을 짊어 바치면서 合意改憲을 완성시키고 合意改憲의 완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매진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서슴지 말고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自負心을 가지고 오늘 이 課業을 완수했다 이렇게 해도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곳이 國會議事堂만 아니면 소리높여 만세를 불러도 좋습니다. 마음속으로 힘차게 만세를 부르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第6次 本會議는 내일 午後 2時에 開議하겠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散會를 宣布합니다. 감사합니다.

(17時26分 散會)

○出席議員數 261人

【報告事項】

○特別委員選任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民主主義黨

- | | | |
|-----|-----|-----|
| 權重東 | 金紀培 | 金文起 |
| 金鍾基 | 金鍾仁 | 南在斗 |
| 柳瓊賢 | 柳根桓 | 朴聖泰 |
| 朴鍾汶 | 安永和 | 梁慶子 |
| 禹炳奎 | 李範俊 | 李祥義 |
| 任斗彬 | 全鍾千 | 丁時采 |

鄭宗澤 鄭好根 趙南照
曹祥鉉 池甲鍾 崔永德
洪禹俊 洪鍾旭 洪熙杓

統一民主黨

金埜鎬 金炯光 文正秀
朴寬用 朴旺植 朴鍾律
宋元英 俞成煥 李震淵
李 哲 張基旭 趙鍾益
趙洪來
金炳洙 朴海充 徐鍾烈
林鍾基

한국국민당

金奎元 金永生 金一潤

咸鍾漢

어느 交渉團體에도 屬하지 아니 하는 議員

朴漢相 張忠準

(10月5日字)

○特別委員長選任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長 丁時采

(10月5日字)

○幹事選任

| 委員會 | 委員名 | 交渉團體 |
|--------|-------|-------|
| 豫算決算特別 | 金 鍾 仁 | 民主正義黨 |
| 豫算決算特別 | 趙 洪 來 | 統一民主黨 |
| 豫算決算特別 | 徐 鍾 烈 | 新韓民主黨 |
| 豫算決算特別 | 金 永 生 | 한국국민당 |

(10月5日字)

○交渉團體所屬議員除籍

한국국민당

趙容直

(10月12日字)

○議案提出

勤勞基準法中改正法律案

(10月5日 朴珪植議員 朴聖泰議員外 143人發議)

發議者 朴珪植 朴聖泰
贊成者 姜慶植(民主正義黨) 康容植
姜昌熙 高 建 高貴男
郭正出 具龍相 權寧禹
權翊鉉 權正達 權重東
金杞培 金斗宗 金文起
金相球 金淑鉉 金 湜
金榮龜 金永先 金榮禎

金容大 金塔泰 金長淑
金在鎬 金正均 金正男
金正禮 金鍾基 金鍾仁
金宗鎬 金重權 金重緯
金 漢 金泰守 金泰鎬
金學俊 金顯煜 金賢子
金炯孝 羅碩昊 南在斗
南載熙 盧泰愚 柳瓊賢
柳根桓 柳尙昊 柳興洙
朴敬錫 朴權欽 朴東鎮
朴翊柱 朴在鴻 朴鍾汶
朴俊炳 裴命國 裴成東
奉斗玩 徐廷和 徐廷華
宋庸植 申相式 沈明輔
沈晶求 安甲潛 安秉珪
安永和 梁慶子 梁昶植
廉吉正 吳世應 吳漢九
王相殷 禹炳奎 俞學聖
尹吉重 李大淳 李敏燮
李範俊 李秉稷 李相翊
李相宰 李祥義 李成烈
李聖浩 李世基 李永旭
李榮一 李龍鎬 李龍薰
李慈憲 李載雨 李鍾贊
李 進 李贊赫 李徹雨
李春九 李致浩 李漢東
任斗彬 林芳鉉 任煥得
張聖萬 全炳宇 全鐘千
鄭 男 鄭東星 鄭石謨
鄭善昊 鄭順德 丁時采
鄭在哲 鄭宗澤 鄭昌和
鄭顯榮 鄭好根 鄭輝東
趙庚穆 曹淇相 趙南照
趙尙來 曹祥鉉 趙一文
趙鍾昊 池甲鍾 池蓮泰
陳懿鍾 陳治範 蔡汝植
千永星 崔明憲 崔秉烈
崔祥鎮 崔永德 崔永喆
崔昌圭 韓良順 許清一
玄敬大 玄鴻柱 洪性宇
洪禹俊 洪鍾旭 洪熙杓

勞動組合法中改正法律案

(10月5日 李贊赫議員 權重東議員外 143人發議)

發議者 李贊赫 權重東

| | | |
|-----|------------|-----|
| 贊成者 | 姜慶植(民主正義黨) | 康容植 |
| 姜昌熙 | 高 建 | 高貴男 |
| 郭正出 | 具龍相 | 權寧禹 |
| 權翊鉉 | 權正達 | 金杞培 |
| 金斗宗 | 金文起 | 金相球 |
| 金淑鉉 | 金 湜 | 金榮龜 |
| 金永先 | 金榮禎 | 金容大 |
| 金裕泰 | 金長淑 | 金在鎬 |
| 金正均 | 金正男 | 金正禮 |
| 金鍾基 | 金鍾仁 | 金宗鎬 |
| 金重權 | 金重緯 | 金 漢 |
| 金泰守 | 金泰鎬 | 金學俊 |
| 金顯煜 | 金賢子 | 金炯孝 |
| 羅碩昊 | 南在斗 | 南載熙 |
| 盧泰愚 | 柳瓊賢 | 柳根桓 |
| 柳尙昊 | 柳興洙 | 朴敬錫 |
| 朴權欽 | 朴珪植 | 朴東鎮 |
| 朴聖泰 | 朴翊柱 | 朴在鴻 |
| 朴鍾汶 | 朴俊炳 | 裴命國 |
| 裴成東 | 奉斗玩 | 徐廷和 |
| 徐廷華 | 宋庸植 | 申相式 |
| 沈明輔 | 沈晶求 | 安甲潛 |
| 安秉珪 | 安永和 | 梁慶子 |
| 梁昶植 | 廉吉正 | 吳世應 |
| 吳漢九 | 王相殷 | 禹炳奎 |
| 兪學聖 | 尹吉重 | 李大淳 |
| 李敏燮 | 李範俊 | 李秉稷 |
| 李相翊 | 李相宰 | 李祥義 |
| 李成烈 | 李聖浩 | 李世基 |
| 李永旭 | 李榮一 | 李龍鎬 |
| 李龍薰 | 李慈憲 | 李載雨 |
| 李鍾贊 | 李 進 | 李轍雨 |
| 李春九 | 李致浩 | 李漢東 |
| 任斗彬 | 林芳鉉 | 任煥得 |
| 張聖萬 | 全炳宇 | 全鐘千 |
| 鄭 男 | 鄭東星 | 鄭石謨 |
| 鄭善昊 | 鄭順德 | 丁時采 |
| 鄭在哲 | 鄭宗澤 | 鄭昌和 |
| 鄭顯繁 | 鄭好根 | 鄭輝東 |
| 趙庚穆 | 曹洪相 | 趙南熙 |
| 趙尙來 | 曹祥鉉 | 趙一文 |
| 趙鍾昊 | 池甲鍾 | 池蓮泰 |
| 陳懿鍾 | 陳治範 | 蔡汶植 |
| 千永星 | 崔明憲 | 崔秉烈 |
| 崔祥鎮 | 崔永德 | 崔永喆 |

| | | |
|-----|-----|-----|
| 崔昌圭 | 韓良順 | 許清一 |
| 玄敬大 | 玄鴻柱 | 洪性宇 |
| 洪禹俊 | 洪鍾旭 | 洪熙杓 |

勞動爭議調整法中改正法律案

(10月5日 禹炳奎議員 任斗彬議員外 143人發議)

| | | |
|-----|------------|-----|
| 發議者 | 禹炳奎 | 任斗彬 |
| 贊成者 | 姜慶植(民主正義黨) | 康容植 |
| 姜昌熙 | 高 建 | 高貴男 |
| 郭正出 | 具龍相 | 權寧禹 |
| 權翊鉉 | 權正達 | 權重東 |
| 金杞培 | 金斗宗 | 金文起 |
| 金相球 | 金淑鉉 | 金 湜 |
| 金榮龜 | 金永先 | 金榮禎 |
| 金容大 | 金裕泰 | 金長淑 |
| 金在鎬 | 金正均 | 金正男 |
| 金正禮 | 金鍾基 | 金鍾仁 |
| 金宗鎬 | 金重權 | 金重緯 |
| 金 漢 | 金泰守 | 金泰鎬 |
| 金學俊 | 金顯煜 | 金賢子 |
| 金炯孝 | 羅碩昊 | 南在斗 |
| 南載熙 | 盧泰愚 | 柳瓊賢 |
| 柳根桓 | 柳尙昊 | 柳興洙 |
| 朴敬錫 | 朴權欽 | 朴珪植 |
| 朴東鎮 | 朴聖泰 | 朴翊柱 |
| 朴在鴻 | 朴鍾汶 | 朴俊炳 |
| 裴命國 | 裴成東 | 奉斗玩 |
| 徐廷和 | 徐廷華 | 宋庸植 |
| 申相式 | 沈明輔 | 沈晶求 |
| 安甲潛 | 安秉珪 | 安永和 |
| 梁慶子 | 梁昶植 | 廉吉正 |
| 吳世應 | 吳漢九 | 王相殷 |
| 禹炳奎 | 尹吉重 | 李大淳 |
| 李大淳 | 李範俊 | 李秉稷 |
| 李秉稷 | 李相宰 | 李祥義 |
| 李祥義 | 李聖浩 | 李世基 |
| 李世基 | 李榮一 | 李龍鎬 |
| 李龍鎬 | 李慈憲 | 李載雨 |
| 李載雨 | 李 進 | 李贊赫 |
| 李漢東 | 李春九 | 李致浩 |
| 任煥得 | 林芳鉉 | 任煥得 |
| 全鐘千 | 全炳宇 | 全鐘千 |
| 鄭石謨 | 鄭東星 | 鄭石謨 |
| 丁時采 | 鄭順德 | 丁時采 |
| 鄭昌和 | 鄭宗澤 | 鄭昌和 |

| | | |
|-----|-----|-----|
| 鄭顯繁 | 鄭好根 | 鄭輝東 |
| 趙庚穆 | 曹洪相 | 趙南照 |
| 趙向來 | 曹祥鉉 | 趙一文 |
| 趙鍾吳 | 池甲鍾 | 池蓮泰 |
| 陳懿鍾 | 陳治範 | 蔡汝植 |
| 千永星 | 崔明憲 | 崔秉烈 |
| 崔祥鎮 | 崔永德 | 崔永喆 |
| 崔昌圭 | 韓良順 | 許清一 |
| 玄敬大 | 玄鴻柱 | 洪性宇 |
| 洪禹俊 | 洪鍾旭 | 洪熙杓 |

勞使協議會法中改正法律案

(10月5日 金杞培議員 沈晶求議員 金重緯議員外 142人 發議)

| | | | |
|-----|------------|-----|-----|
| 發議者 | 金杞培 | 沈晶求 | 金重緯 |
| 贊成者 | 姜慶植(民主正義黨) | 康容植 | |
| | 姜昌熙 | 高建 | 高貴男 |
| | 郭正出 | 具龍相 | 權寧禹 |
| | 權翊鉉 | 權正達 | 權重東 |
| | 金斗宗 | 金文起 | 金相球 |
| | 金淑鉉 | 金湜 | 金榮龜 |
| | 金永先 | 金榮禎 | 金容大 |
| | 金裕泰 | 金長淑 | 金在鎬 |
| | 金正均 | 金正男 | 金正禮 |
| | 金鍾基 | 金鍾仁 | 金宗鎬 |
| | 金重權 | 金漢 | 金泰守 |
| | 金泰鎬 | 金學俊 | 金顯煜 |
| | 金賢子 | 金炯孝 | 羅碩昊 |
| | 南在斗 | 南載熙 | 盧泰恩 |
| | 柳瓊賢 | 柳根桓 | 柳尚昊 |
| | 柳興洙 | 朴敬錫 | 朴權欽 |
| | 朴珪植 | 朴東鎮 | 朴聖泰 |
| | 朴翊柱 | 朴在鴻 | 朴鍾汝 |
| | 朴俊炳 | 裴命國 | 裴成東 |
| | 奉斗玩 | 徐廷和 | 徐廷華 |
| | 宋庸植 | 申相式 | 沈明輔 |
| | 安甲潛 | 安秉珪 | 安永和 |
| | 梁慶子 | 梁昶植 | 廉吉正 |
| | 吳世應 | 吳漢九 | 王相殷 |
| | 禹炳奎 | 俞學聖 | 尹吉重 |
| | 李大淳 | 李敏燮 | 李範俊 |
| | 李秉稷 | 李相翊 | 李相宰 |
| | 李祥義 | 李成烈 | 李聖浩 |
| | 李世基 | 李永旭 | 李榮一 |
| | 李龍鎬 | 李龍薰 | 李慈憲 |
| | 李載雨 | 李鍾贊 | 李進 |

| | | |
|-----|-----|-----|
| 李贊赫 | 李敏雨 | 李春九 |
| 李致浩 | 李漢東 | 任斗彬 |
| 林芳鉉 | 任煥得 | 張聖萬 |
| 全炳宇 | 全鐘千 | 鄭男 |
| 鄭東星 | 鄭石謨 | 鄭善昊 |
| 鄭順德 | 丁時采 | 鄭在哲 |
| 鄭宗澤 | 鄭昌和 | 鄭顯繁 |
| 鄭好根 | 鄭輝東 | 趙庚穆 |
| 曹洪相 | 趙南照 | 趙向來 |
| 曹祥鉉 | 趙一文 | 趙鍾吳 |
| 池甲鍾 | 池蓮泰 | 陳懿鍾 |
| 陳治範 | 蔡汝植 | 千永星 |
| 崔明憲 | 崔秉烈 | 崔祥鎮 |
| 崔永德 | 崔永喆 | 崔昌圭 |
| 韓良順 | 許清一 | 玄敬大 |
| 玄鴻柱 | 洪性宇 | 洪禹俊 |
| 洪鍾旭 | 洪熙杓 | |

男女雇傭平等法案

(10月5日 金榮禎議員 金長淑議員外 44人 發議)

| | | | |
|-----|-----|-----|-----|
| 發議者 | 金榮禎 | 金長淑 | |
| 贊成者 | 姜昌熙 | 郭正出 | 具龍相 |
| | 權重東 | 金文起 | 金湜 |
| | 金正男 | 金正禮 | 金鍾基 |
| | 金重緯 | 金漢 | 金泰鎬 |
| | 金賢子 | 金炯孝 | 朴敬錫 |
| | 朴聖泰 | 朴翊柱 | 朴鍾汝 |
| | 朴俊炳 | 奉斗玩 | 安永和 |
| | 梁慶子 | 梁昶植 | 廉吉正 |
| | 李敏燮 | 李秉稷 | 李相宰 |
| | 李榮一 | 李慈憲 | 李載雨 |
| | 李進 | 李致浩 | 全炳宇 |
| | 鄭男 | 鄭在哲 | 鄭宗澤 |
| | 趙向來 | 曹祥鉉 | 趙一文 |
| | 崔昌圭 | 韓良順 | 許清一 |
| | 洪性宇 | 洪禹俊 | |

勤勞基準法中改正法律案

(10月5日 金令培議員外 69人 發議)

| | | | |
|-----|-----|-----|-----|
| 發議者 | 金令培 | | |
| 贊成者 | 姜三載 | 高在清 | 權五台 |
| | 金東圭 | 金東英 | 金東旭 |
| | 金東周 | 金得洙 | 金奉旭 |
| | 金奉祚 | 金璋鎬 | 金聖植 |
| | 金守漢 | 金完泰 | 金容午 |
| | 金正吉 | 金正秀 | 金泰龍 |

| | | |
|-----|-----|-----|
| 金鉉圭 | 金顯秀 | 金炯璟 |
| 金炯光 | 金炯來 | 盧承煥 |
| 柳濟然 | 柳峻相 | 明華燮 |
| 睦堯相 | 文正秀 | 朴寬用 |
| 朴 實 | 朴旺植 | 朴容萬 |
| 朴 一 | 朴鍾律 | 朴燦鍾 |
| 潘亨植 | 徐錫宰 | 宋元英 |
| 宋千永 | 宋鉉燮 | 辛基夏 |
| 慎順範 | 沈完求 | 安東善 |
| 俞成煥 | 尹榮卓 | 李尙玟 |
| 李永權 | 李英駿 | 李龍熙 |
| 李載根 | 李在玉 | 李重載 |
| 李震淵 | 李 哲 | 張基旭 |
| 鄭相九 | 趙炳鳳 | 趙舜衡 |
| 趙永壽 | 趙鍾益 | 趙洪來 |
| 崔洛道 | 崔 薰 | 許景九 |
| 許京萬 | 洪思德 | 黃珞周 |

勞動組合法中改正法律案

(10月5日 金完泰議員外 69人 發議)

| | | | |
|-----|-----|-----|-----|
| 發議者 | 金完泰 | | |
| 贊成者 | 姜三載 | 高在清 | 權五台 |
| | 金東圭 | 金東英 | 金東旭 |
| | 金東周 | 金得洙 | 金奉旭 |
| | 金奉祚 | 金瑋鎬 | 金聖植 |
| | 金守漢 | 金令培 | 金容午 |
| | 金正吉 | 金正秀 | 金泰龍 |
| | 金鉉圭 | 金顯秀 | 金炯璟 |
| | 金炯光 | 金炯來 | 盧承煥 |
| | 柳濟然 | 柳峻相 | 明華燮 |
| | 睦堯相 | 文正秀 | 朴寬用 |
| | 朴 實 | 朴旺植 | 朴容萬 |
| | 朴 一 | 朴鍾律 | 朴燦鍾 |
| | 潘亨植 | 徐錫宰 | 宋元英 |
| | 宋千永 | 宋鉉燮 | 辛基夏 |
| | 慎順範 | 沈完求 | 安東善 |
| | 俞成煥 | 尹榮卓 | 李尙玟 |
| | 李永權 | 李英駿 | 李龍熙 |
| | 李載根 | 李在玉 | 李重載 |
| | 李震淵 | 李 哲 | 張基旭 |
| | 鄭相九 | 趙炳鳳 | 趙舜衡 |
| | 趙永壽 | 趙鍾益 | 趙洪來 |
| | 崔洛道 | 崔 薰 | 許景九 |
| | 許京萬 | 洪思德 | 黃珞周 |

勞動爭議調整法中改正法律案

(10月5日 金完泰議員外 69人 發議)

| | | | |
|-----|-----|-----|-----|
| 發議者 | 金完泰 | | |
| 贊成者 | 姜三載 | 高在清 | 權五台 |
| | 金東圭 | 金東英 | 金東旭 |
| | 金東周 | 金得洙 | 金奉旭 |
| | 金奉祚 | 金瑋鎬 | 金聖植 |
| | 金守漢 | 金令培 | 金容午 |
| | 金正吉 | 金正秀 | 金泰龍 |
| | 金鉉圭 | 金顯秀 | 金炯璟 |
| | 金炯光 | 金炯來 | 盧承煥 |
| | 柳濟然 | 柳峻相 | 明華燮 |
| | 睦堯相 | 文正秀 | 朴寬用 |
| | 朴 實 | 朴旺植 | 朴容萬 |
| | 朴 一 | 朴鍾律 | 朴燦鍾 |
| | 潘亨植 | 徐錫宰 | 宋元英 |
| | 宋千永 | 宋鉉燮 | 辛基夏 |
| | 慎順範 | 沈完求 | 安東善 |
| | 俞成煥 | 尹榮卓 | 李尙玟 |
| | 李永權 | 李英駿 | 李龍熙 |
| | 李載根 | 李在玉 | 李重載 |
| | 李震淵 | 李 哲 | 張基旭 |
| | 鄭相九 | 趙炳鳳 | 趙舜衡 |
| | 趙永壽 | 趙鍾益 | 趙洪來 |
| | 崔洛道 | 崔 薰 | 許景九 |
| | 許京萬 | 洪思德 | 黃珞周 |

勞動委員會法中改正法律案

(10月5日 金正秀議員外 69人 發議)

| | | | |
|-----|-----|-----|-----|
| 發議者 | 金正秀 | | |
| 贊成者 | 姜三載 | 高在清 | 權五台 |
| | 金東圭 | 金東英 | 金東旭 |
| | 金東周 | 金得洙 | 金奉旭 |
| | 金奉祚 | 金瑋鎬 | 金聖植 |
| | 金守漢 | 金令培 | 金完泰 |
| | 金容午 | 金正吉 | 金泰龍 |
| | 金鉉圭 | 金顯秀 | 金炯璟 |
| | 金炯光 | 金炯來 | 盧承煥 |
| | 柳濟然 | 柳峻相 | 明華燮 |
| | 睦堯相 | 文正秀 | 朴寬用 |
| | 朴 實 | 朴旺植 | 朴容萬 |
| | 朴 一 | 朴鍾律 | 朴燦鍾 |
| | 潘亨植 | 徐錫宰 | 宋元英 |
| | 宋千永 | 宋鉉燮 | 辛基夏 |
| | 慎順範 | 沈完求 | 安東善 |
| | 俞成煥 | 尹榮卓 | 李尙玟 |
| | 李永權 | 李英駿 | 李龍熙 |
| | 李載根 | 李在玉 | 李重載 |

| | | |
|-----|-----|-----|
| 李震淵 | 李哲 | 張基旭 |
| 鄭相九 | 趙炳鳳 | 趙舜衡 |
| 趙永壽 | 趙鍾益 | 趙洪來 |
| 崔洛道 | 崔薰 | 許景九 |
| 許京萬 | 洪思德 | 黃珞周 |

| | | |
|-----|-----|-----|
| 李成烈 | 李永旭 | 李榮一 |
| 李龍薰 | 任斗彬 | 任煥得 |
| 鄭善昊 | 鄭順德 | 鄭昌和 |
| 崔明憲 | 崔永喆 | 玄敬大 |

文教公報委員會에 回附하겠음.

勞使協議會法中改正法律案

(10月5日 朴鍾律議員外 69人 發議)

| | | | |
|-----|-----|-----|-----|
| 發議者 | 朴鍾律 | | |
| 贊成者 | 姜三載 | 高在德 | 權五台 |
| | 金東圭 | 金東英 | 金東旭 |
| | 金東周 | 金得洙 | 金奉旭 |
| | 金奉祚 | 金璉鎬 | 金聖植 |
| | 金守漢 | 金令培 | 金完泰 |
| | 金容午 | 金正吉 | 金正秀 |
| | 金泰龍 | 金鉉圭 | 金顯秀 |
| | 金炯環 | 金炯光 | 金炯來 |
| | 盧承煥 | 柳濟然 | 柳峻相 |
| | 明華燮 | 睦堯相 | 文正秀 |
| | 朴寬用 | 朴實 | 朴旺植 |
| | 朴容萬 | 朴一 | 朴燦鍾 |
| | 潘亨植 | 徐錫幸 | 宋元英 |
| | 宋千永 | 宋鉉燮 | 辛基夏 |
| | 慎順範 | 沈完求 | 安東善 |
| | 俞成煥 | 尹榮卓 | 李尙玟 |
| | 李永權 | 李英駿 | 李龍熙 |
| | 李載根 | 李在玉 | 李重載 |
| | 李震淵 | 李哲 | 張基旭 |
| | 鄭相九 | 趙炳鳳 | 趙舜衡 |
| | 趙永壽 | 趙鍾益 | 趙洪來 |
| | 崔洛道 | 崔薰 | 許景九 |
| | 許京萬 | 洪思德 | 黃珞周 |

이상 10件 保健社會委員會에 回附하겠음.

圖書館法改正法律案

(10月5日 金賢子議員 曹祥鉉議員 趙一文議員 陳治範議員 金炯孝議員 韓良順議員 朴聖泰議員 洪鍾旭議員外 30人 發議)

| | | | |
|-----|-----|-----|-----|
| 發議者 | 金賢子 | 曹祥鉉 | 趙一文 |
| | 陳治範 | 金炯孝 | 韓良順 |
| | 朴聖泰 | 洪鍾旭 | |
| 贊成者 | 金杞培 | 金淑鉉 | 金榮龜 |
| | 金正男 | 金鍾仁 | 金重權 |
| | 金漢 | 羅碩昊 | 柳瓊賢 |
| | 朴敬錫 | 朴珪植 | 裴成東 |
| | 奉斗玩 | 徐廷和 | 宋庸植 |
| | 申相式 | 沈晶求 | 李敏燮 |

○1987年度農業動向에 관한 年次報告書

10月6日 政府로부터 農業基本法 第4條第5號의 規定에 의하여 1987年度農業動向에 관한 年次報告書가 提出됨.

農水產委員會에 參考로 回附하겠음.